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

2022. 4. 20.(수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. 03. 31. 양순임 의원 외 8명 발의 (의안번호 484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04. 01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【2022. 4. 13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양순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임용·전보·평정·보직 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장 총칙
 - 목적, 적용범위,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 (제1조~제5조)
- 안 제2장 시험
 - 임용시험 제출서류, 자격, 특전, 시험위원, 면접 등을 규정(제6조~제19조)

○ 안 제3장 임용

- 신규임용 합격자의 등록 등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(제20조~제26)
- 승진임용의 원칙과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 (제27조~제31조)

○ 안 제4장 가산점

- 자격증 가점, 실적 가점 등 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규정 (제32조~제33조)

○ 안 제5장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

-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규정 (제34조~제4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유천곤)

- 본 규칙 제정(안)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, 적용범위,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고, 제2장 시험에서는 임용시험 제출서류, 자격, 시험위원, 면접 등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제3장 임용에서는 신규임용 합격자의 등록 등 신규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승진임용의 원칙과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, 제4장 가산점에서는 자격증 가점, 실적가점 등 가산점 부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, 제5장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안건으로, 관련 규정 등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

2022. 4. 20.(수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. 03. 31. 정혜영 의원 외 8명 발의 (의안번호 485호)

나. 회부일자: 2022. 04. 01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【2022. 4. 13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혜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등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사항 규정 (안 제2조 제1항)
- 팀 신설 및 의회사무국 소속 팀 사무분장 사항 규정 (안 제3조 제1항,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유천곤)

- 본 규칙 개정(안)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의 인사권독립과 관련 의회사무국의 추가적인 사무분장과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팀 신설 및 그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관련 규정 등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